

## 4. 생명문화센터 운영규정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부설교육기관인 생명문화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센터의 명칭은 “생명문화센터”라 한다.

제3조 (소재지) 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,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생명돌봄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단위 전공 운영
2. 생명문화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
4. 지-산-학 취·창업 협의체 운영
5. 취·창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
6. 생명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
7. 기타 운영 목적을 위한 사업

### 제2장 조 직

제5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연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둔다

1. 교육장 ‘생명문화홀’
2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

제6조 (센터장 등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필요시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해당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고,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,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직원 등) 센터의 사무를 위하여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하되, 그 절차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「직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 (목적)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제9조 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
3.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전항의 각 호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 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회의록 작성, 관련 사무관리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한다.

제12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출장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비밀엄수)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4장 회계

제14조 (재정) 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

1. 교내·외 연구·사업비
2. 수강료
3. 기부금
4. 기타 수익 등

제15조 (예산편성) 센터의 수입 및 지출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16조 (회계년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7조 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회계업무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.

## 제5장 기타

제18조 (규정의 제·개정)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·개정을 발의 할

수 있다.

② 규정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「제규정관리규정」에 따른다.  
제19조 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